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경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 김수규, 김재형, 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 유 용, 유정희, 이광호, 이병도, 이상훈, 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전석기, 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, 황인구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운영(‘20.5.)으로 안전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됐음에도, 성북 장위10구역·광주 동구 해체공사장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였으며,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현장은 정비사업부서, 그 외 현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부서 이원화로 안전관리대책 적용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.
- 「건축물관리법」의 해체허가 대상과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해체심의 대상이 달라 운영에 혼선이 있어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해체심의대상을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,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해체심의대상에 포함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마.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(다만,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능 및 절차 등)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구 위원회 심의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(다만,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 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·사. (생 략)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7조(기능 및 절차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「건축물 관리법」 제30조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(다만,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·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